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11. 20.(화) 15: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양문석 상임위원 (1인)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 의결안건 '사'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제60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6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의결사항

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당 계획에 관한 건 - (2012-62-247)

-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계획(안)과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 주파수 할당계획 주요내용
 - ①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75 ~ 2615MHz(40MHz폭)
 - ②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19.3.29일까지(약 6년)
 - ③ 할당방법
 -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 의해 할당하며, 경매는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
 - ※ 경매 장소 및 세부진행방안 등 필요사항은 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최저경쟁가격 : 647억원
 - ④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 (주파수 용도)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 (기술방식) ITU에서 정한 OFDMA TDD WMAN(WiBro) 또는 그 기술에서 진화된 방식
 - 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IMT·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동법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⑥ 할당조건
 -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 주파수 할당 신청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망 구축계획 등 주요사항 불이행시 전파법 제15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동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이용기간 단축(안) >

- 중간(3년·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8개월씩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5개월씩 단축

o 추진일정

- '12. 11월 : 주파수할당 공고
- '12. 12월 : 주파수할당 신청·접수 (1개월)
- '13. 2월 : 주파수 경매 실시

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2-62-248)

- o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유선방송의 서비스품질 안정화와 방송 신호 디지털화에 따른 세부품질항목 간소화 등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날로그 입력신호 및 장비(주파수변조기, 신호처리기)에 대한 해당 조항 삭제
- VoD 서비스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른 추가 주파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서비스 주파수대역 확대

※ (현행) 552~750MHz → (개정후) 54~1,002MHz

- 데이터방송 단일표준(OCAP)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플랫폼(안드로이드, HTML5) 등장 등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설비별로 구성된 기술기준 체계를 유선방송(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별로 합리적으로 개편[(현행) 제5장 35조 → (개정) 제3장 3절 36조]

②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동 고시가 준용하고 있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 개정에 따른 해당 자구 수정

○ 향후일정

- '12. 11월 말 : 관보 게재 및 시행

다. 위헌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 (2012-62-249)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련 위헌판결에 따라 (주)문화방송의 '뉴스 후' 프로그램에 대해 처분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취소하기로 의결함

라. 2012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 (2012-62-250)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의 2011년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2012년 방송평가」 개요

- 방송평가 대상 기간 : 2011. 1. 1 ~ 12. 31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 총 150개 사업자 339개 채널

	지상파			SO	위성	PP		합 계
	TV	R	DMB			보도	홀소평	
사업자 수 (채널수)	46개 + 3개 (DMB전용) (TV 64개, R 155개, DMB 19개)			94개	1개	1개	5개	150개 (339개)

② 「2012년 방송평가」 결과 주요 내용

㉠ 지상파

- (지상파TV) 중앙3사의 경우 심의제재 감점 등으로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KBS1, KBS2, SBS, MBC 순임
- (지역민방) 어린이프로그램과 재난방송 편성실적이 향상된 제주JIBS가 전년에 이어 최고점을 얻었으며, 나머지 9개 민방은 비슷(77~79점)
- (지상파 라디오) SBS와 MBC 라디오는 운영영역 향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KBS 라디오는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점수 하락
- (지상파 DMB TV) 지상파계열DMB가 비지상파계열DMB에 비해 지상파 수중계에 따라 심의제재 건수 증가 및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저조로 점수가 낮음

㉞ 비지상과

- (MSO) 씨앤엠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SO가 운영영역 점수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
-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운영영역(내부감사 및 회계 관리 적절성 여부, 방송 기술 투자 증가 등)의 평가점수 상승으로 3년 연속 상승 추세
- (보도PP) YTN은 내용·편성 영역(심의제재, 재난방송 예방프로그램 편성저조)의 평가점수 하락으로 3년 연속 하락 추세
- (홈쇼핑PP) 현대홈쇼핑이 최고점, 우리홈쇼핑 최저점을 받았으나, 다른 방송사업자 그룹군에 비해 편차가 크지 않음

마. 기간통신역무의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케이티의 (주)케이티셋 법인 설립 - (2012-62-251)

-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주)케이티의 (가칭) (주)케이티셋 법인 설립 인가신청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주)케이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원안대로 법인설립 인가와 변경허가를 하기로 의결하고,

- 향후, 설립되는 (주)케이티셋이 위성 관련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의 지위를 (주)케이티로부터 승계하도록 함

※ KT의 인가, 변경허가 신청 사유 : KT는 주요 유무선 통신을 제외한 사업의 전문화책임 경영을 위해 위성, 미디어 콘텐츠, 부동산 등 3개 사업부문의 전문 기업화 추진 중

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2012-62-252)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과 관련된 징수율 결정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징수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법제처 개선안 반영)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고시로 재위임하여 법령체계의 위헌성 존재
- (개정) 기본법에서 시행령을 거쳐 고시로 재위임된 징수율의 결정권한을 고시로 직접 위임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권한위임의 변경(기본법→고시)에 따라 시행령의 '징수율 책정 시 고려사항'도 기본법에 상향시켜 규정

②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통일하고 징수시기를 명확화

- (현행) 기본법에서 분담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결산상 영업이익) 기준연도가 사업자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분담금 징수시기에 대해 법령해석상 이견이 있음
- (개정)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해당연도'로 통일하고,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

③ 위헌성 정비에 따른 시행령의 위임근거 마련

- 위헌성 정비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법에서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를 마련

○ 향후일정

- '12. 11월 : 법제처 심사
- '12. 12월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 (2012-62-253)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EBS 사장 면접 대상 후보자를 정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기로 의결함
- 면접 대상 후보자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친 9명의 지원자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 투표를 통해 3배수로 정함

㉑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신규서비스에 대한 번호부여 근거 마련 및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① '012'번호를 M2M(사물지능통신) 용도로 부여
 - 전국 무선호출사업자 폐업(리얼텔레콤, '11.3.2)으로 회수된 012번호를 M2M 용도로 부여

② 번호 희소성이 높은 10Y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

- 특수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통신망 유지보수' 용도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되는 업무'로 용도 변경

③ 번호의 효율적 관리 강화

- 매년 번호사용현황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반기별 재부여를 포함한 번호사용 현황을 번호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번호판매 중계 사이트를 통해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번호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회수 근거 마련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 '12. 11월 중순 ~ 12월초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2. 12월중
- 위원회 의결 및 관보게재 : '13. 1월중

6. 폐 회 (16:17)